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11. 27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9. 12. 4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관련 법령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명 변경 및 용어정비, 감면대상 축소 및 명확화, 단순조문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대한 근거 및 조문내용 명확화(안 제1조, 안 제2조)
나. “주택” 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의 범위 명확화(안 제4조, 제10조제1항, 제2항, 안 제17조)
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안 제34조로 신설(안 제5조의 2,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라.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 폐지(안 제7조)
마. 지방세법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초과 경감율 배제로 과세형평성 유지(안 제9조의 제2항)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안 11조)
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아. 미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법령 명확화 (안 제14조)
자. 전방조종자동차 정의 직접 규정함,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감면 폐지, 현행 본문과 1호를 통합하여 본문으로 구성하고 2호를 삭제함(안 제15조의 2)

차. 신용보증채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 제외 명시(안 제19조)

카. 군세감면신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서식”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명시(안 제3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 「고성군세 감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등
- 2009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양(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세정과 - 11963(2009. 10. 1), 세정과 - 12500(2009. 10. 14), 세정과 - 12860(2009. 10. 20) 감면조례 표준안

○ 예산조치 : 불필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와 제10조, 제17조에서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은 감면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폐지토록 한 것이며, 제9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서 규정, 본문 제15조의2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전방조종자동차 정의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함과 아울러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일률 도래로 폐지코자하는 것이 개정의 주 내용으로서

○ 검토의견으로는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일선자치단체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코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감면 조례상의 ‘주택’의 범위 명확화와 용어의 정리, 일부 증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비감면대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을 근거 법령에 의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감면 조항 삭제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으로 세수결합이나 세수증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와, 세수결합시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추후 세입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조례 개정으로 세수의 결합이나 증수가 발생하는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
- 답 : 구체적인 분석은 못해 보았지만 증수되는 부분도 있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 재정운영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우리군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
- 답 : 현재는 없습니다.
- 문 :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2009년 말로 끝난다는 것인지?
- 답 : 본 조례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을 하지 않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12.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